

대한한의사협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우)157-200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가양동 26-27) / (전화) 02-2657-5050 / (팩스) 02-2657-5005
총무국 총무인사팀 총무국장직무대행겸총무인사팀장 윤태호 과장 김성진 담당 남보라 담당 최윤정 E-mail:vvkoma73@cholcom

문서번호 대한의 제 1275 호

시행일자 2013. 9. 13. (년)

경 유

수 신 각 시도지부장

참 조 사무국(처)장

선			지	
람			시	
접	일자	.	결	
수	시각	:	재	
	번호		·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심	사	자	심	사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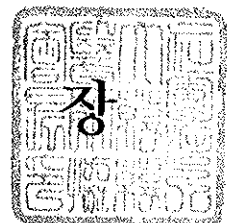
제 목 자연장 홍보운동 관련안내 협조요청

1. 관련 : 복지사업단 - 1393(2013.9.9)

2. 위와 관련하여 장례문화선진화정책 구현의 일환으로 장묘문화 인식개선 및 “자연장 홍보운동”에 대한 홍보지원 요청이 있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대한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수 신 :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참 조 : 총무국장

제 목 : 자연장 홍보운동 관련안내 협조요청

1. 관련근거 (따로 붙임)

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10호, 2011.03.30.) 제3조(협조 및 지원)

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292호(2013.01.23.) 위 제목 관련 협조청원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따른 대한노인회 지원법 제정은 공익단체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시대적 소명으로, 많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우고, 아울러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동안 본회에서는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를 위한 장례문화선진화정책 구현의 일환으로 장묘문화 인식개선 및 자연장(自然葬)홍보운동은 물론 노인권익신장과 일자리창출 및 취업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취업관련교육 등 관련사업 홍보에 전력하고 있사오나,

3. 우리 노인들로서는 홍보활동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 청원 드리오니 많은 격려 바라옵고, 이에 보다 많은 지도계층으로 장묘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자연장 홍보운동이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붙임문서 등을 참조하시어 다음 협조사항을 적극검토 선처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조사항 : 귀 협회 산하 협력기관(시도지부) 단체 등으로 관련문서 안내협조

-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홍보지원 협조

나. 홍보내역 : 장묘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자연장 홍보운동 및 관련사업 안내

- 관련 홍보 동영상 및 설문지 의견수렴 등

다. 주관단체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복지사업단 ☎ (02)3785-3456 / 1544-8929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54 대한노인회 중앙회 별관

붙임 : 관련문서 사본 및 관련자료. 끝.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장



실장 강해숙

홍보팀장 박천석

부단장 이종남

운영부총장 이병해

회장 이심

협조자 : 부장 김일홍

국장 이상문

시행 : 복지사업단-1393 (2013. 09. 09.)

접수 :

우 140-120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54 (효창동) 중앙회 별관

홈페이지 : www.koreapeople.co.kr

전화(업무직통) : (02)3785-3456 전송 : (02)702-4301

이메일(주무): jn8991@naver.com / 공개

수신 : 대한한 의사협회 총무국장 해준

협조관련 소명말씀

~정변하옵고 본회 홍보지원 협조요청에 따른 소명말씀 드리오니 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적극 협조 선택바랍니다.

1. (사)대한노인회는 16개 광역시, 도 연합회와 245개 시.군.구, 지회 및 1,997개 분회 와 61,000 여 경로당, 334개 노인대학 등을 300 만 등록회원 중심으로 관리 운영하는 명실 공히 노인을 대표하는 단체임을 상기 알려 드립니다.
2. (사)대한노인회 복지사업단 은 본회 정관 운영규정에 준한 노인권익신장과 일자리창출 및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출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9항 에 명시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노년시대신문 발간 및 관련출판사업 등으로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 취업지원 및 관련복지사업 등을 적극 추진 중 이옵고, 보다 효율적인 노인복지 실현 및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관련사업 수익금 및 본회 회원 자율적 기부금 등으로 (재)노인지원재단 을 설립, 운영이 목전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3. 특히 평소 노인을 평하하는 극히 일부 지도층 분들께도 쌍짓돈으로 부터 일생동안 힘들게 모아온 수십억 재산 등을 장학기금 및 유족헌금 등으로 기꺼이 헌납하신 본회 노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논하기 전 젊은 날 민족의 아픔인 6.25 전쟁에 목숨을 걸었고, 힘든 짐을 어깨와 지게로 생존을 위한 힘든 시간들을 오직 가족 봉양과 자녀들의 양육을 행복으로 알고 지내온 우리노인들? 사회적 보살핌은 전무했던 시절 ? 언어도 통하지 않는 서독 탄광으로 ? 꽃다운 처녀시절 원망의 한숨마지 않은 채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뒤로하고, 험웃가지만 챙겨들고 이국땅 간호보조원으로 내몰린 우리 할머니 버지 할머니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3. 사회복지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한 암울한 세월을 이겨낸 우리 노인들? 정신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오직 잘살아보겠다는 의지만으로 숨쉬기조차 힘든 열사의 땅 중동건설현장으로, 험겨운 짐을 풀기도 전에 노년이 되어버린 대다수 우리노인들? 이러한 노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남은여생 결코 자녀들의 짐이 될 수 없다는 절실한 생각으로 노인자살선진국이 된 우리 대한민국?
4.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한 방안으로 본회 관련사업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부단한 노력과 국민적 염원을 담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참석의원 전원가결로 입법시행 공포한 법률로서, 고령화시대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라옵고, 홍보 부족으로 인한 제도권 정착에 다소 미흡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더더욱 자신의 노후는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녀들의 배를 불린 후에야 자신의 허기를 느껴온 삶을 기본덕목으로 알고 오직 가족봉양과 자녀들의 교육에만 매달리다 걸기조차 힘든 노년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실상을 가능한 많은 지도계층으로 잠시나마 상기시킴으로서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는 경로 효친은 물론 충효 정신 함양으로 건전한 직장가족 문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고,
6. 아울러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와 장묘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장례문화 선진화정책 구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노인권익신장에 보탬이 될 것으로 더욱 많은 관심 바라옵고, 본회관련 홍보사업 등은 활동 가능한 상당수 노인들의 참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우리 노인들로서는 홍보활동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 청원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대다수 소외된 노인들의 참여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야만 자녀부담의 최소화는 물론 노인 권익신장과 사회 공동책임으로 전환하는 의식 또한 날로 정착되리라 봅니다.
7. 끝으로 일생동안 살아온 많은 경험과 지혜가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여생 다할 것으로, 니어가 사회를 책임지는 존경받는 노인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안타까운 소망임을 피력하옵고,

배례 드리지 못한 점 해량 바라옵고, 부족하나마 협조관련 소명말씀으로 해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 09. .

(사)대한노인회 복지사업단 부단장 / 이 중 남 배상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54 (효창동) 중앙회 별관 ☎ (02)3785-3456 / 1544-8929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10호, 2011. 3. 30.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촉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양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6조(조세감면 등) ① 대한노인회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상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예산 등의 보고) 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결산 등의 보고) ① 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정무·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누구든지 대한노인회거나 아닌 자는 대한노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0510호, 2011. 3.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葬禮文化 先進化 方案(요약본)

가. 현황

-우리나라의 장묘관습은 매장중심 문화로서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과 환경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그동안 정부의 화장 문화 정착을 위한 꾸준한 홍보와 계몽으로 60%이상 3명중 2명으로 화장을 하는 장례문화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 종력 선진국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연장(自然葬)을 선호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화장 문화의 증가추세에 따른 화장시설이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정부의 적극적인 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나. 문제점

1.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를 감안할 때 시설부족.
2. 복잡한 상례관습에 의한 의전 절차의 심적 부담.
3. 매장문화에서 화장 문화로의 의식개혁
4. 의례절차에 따른 과대한 장례비용
5. 장례관련업의 제도권 확립 / 추모공원, 장례식장, 봉안당, 수목장, 상조회 등.

다. 대책 (제안)

1. 장례예식장 등 관련업체에서 화장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제정 등 지원 및 규제완화.
2. 생활덕목으로 이어져온 상례 관습 등 죽음에 따른 병국민 홍보교육을 통해 점진적으로 실생활에 적합하도록 계몽선도하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낭비적인 관행 자제 유도.
3. 화장 문화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화장 장려금제도 활성화 정책은 물론 사회 중요 지도층의 시범적인 역할 분담 또한 중요하다.
4. 우리의 장묘문화는 종교, 윤리, 전통관습, 무속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미풍양속으로 이어져 왔기에 점진적으로 대학, 교육원, 종교단체 및 노인단체 등에서 "죽음의 대비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생활화함으로써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나아가 선진화된 장례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제도권 확립에도 상당 기여할 것임.
5. 상례의 복잡한 의례로 인한 심적 부담은 물론 과대한 비용 부담 등의 요인으로 우리 서민생활의 지해로서 이어져온 "상포계"로 부터 발생한 상조회가 국민생활의 일부분으로 확산되므로 인한 업체의 난립으로 일부 부실업체로 발생하는 부작용 또한 유발되니 결코 필요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권 정립이 시급하다.
6. 사실상 화장 문화가 일반화되어도 시설부족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임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에 따른 규제완화가 절실하고 화장으로 인한 유골봉인 시설에 따른 비용은 물론 자연훼손 등을 줄일 수 있는 自然葬(수목/화초/잔디/散骨)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회 복지사업단에서는 국토이용효율화를 위한 장례문화 선진화정책 구현에 적극참여, 장묘문화 인식개선 및 자연장 홍보에 따른 선도적인 역할 분담을 약속드립니다.

2009. 12.

(사)대한노인회 복지사업단

부단장 이 중 남 배성

☎ 1544-8929 / 02-3785-3456 업무직통

◆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관련자료 제출 문서로 관련협조에 참고하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